

【 감사결과 보고서 】

2026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2026. 6.

감 사 관

□ 감사 배경 및 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2026년 자체 감사 연간계획[감사관-19069호(2025.12.31.)]
- 기관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및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방안 제시

□ 감사 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6. 4. 24.(금) ~ 4. 30.(목) [5일간]
※ (사전감사 기간) 2026. 4. 20.(월) ~ 4. 22.(수) [3일간]
- 감사반(인원) : 7명(총괄 : 감사관)

□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용인시산업진흥원
- 감사범위 : 2023. 9. 1. ~ 2026. 2. 28. (2년 6개월)
- 감사 중점분야

- 조직 운영 및 인사·채용 업무 추진 적정 여부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회계·계약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사업 추진 및 창업기업센터 등 운영 적정 여부
- 각종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시설물, 안전·보건 관리실태 점검 등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점검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 감사 결과 처리

- 감사 마감회의 : 2026. 4. 30.(목) / 용인시산업진흥원 원장실
- 청렴시민감사관 및 자체 실무검토위원회 : 2026. 6. 10.(수)

□ 감사결과 총괄

지점 사항 건수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합계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처분	합계	환수	지급	합계	훈계
10	17	6	4	3	2	1	1	2,516	2,164	352	1	1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종류	금액	
계	총 10건(처분요구 9건, 현지조치요구 1건)	합계 17 건	합계	2,516,910	합계 1 명
		주의 6 건	환수	2,163,960	훈계 1 명
		시정 4 건	지급	352,950	
		개선 3 건			
		권고 2 건			
		통보 1 건			
		현지처분 1 건			
1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운영 부적정	주의	-	-	훈계 1
2	지원사업 운영 및 선정 소홀	통보, 주의	-	-	
3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운영 및 관리 미흡	개선, 주의	-	-	
4	채용 절차 개선	개선, 주의	-	-	
5	성과급 산정 부적정	시정	환수 지급	\$\$\$ \$\$\$	
6	직인 관리 규정 미비 및 등록·관리 부적정	개선, 시정	-	-	
7	계약체결 시 업무처리 소홀	권고, 주의	-	-	
8	인사 규정 등 정비 및 이행 필요	권고, 주의	-	-	
9	퇴직자 경비 정산 부적절	시정	환수	\$\$\$	
10	【현지조치】 계약금액 조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시정	환수	\$\$\$	

처분요구 및 개선·권고 사항

1.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운영 부적정 (훈계·주의요구)

1) 지방계약법상 계약 절차 등 위반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대가산정 가이드를 근거로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입찰 진행기간 또는 발주 전 기간에 대해 부당하게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하였고, 용역 계약기간이 9~11개월임에도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실제 유지보수기간에 따라 연간 비용으로 산출된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위반하였음.

[표 1] ▲▲ 유지보수 용역 계약 및 대가지급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발주일	계약기간	실제 유지보수기간	계약금액	대가지급액	계약상대자
2024	2024.01.○○	2024.02.♣♣ ~ 2024.12.31	2024.01.◎◎ ~ 2025.03.☆☆	26,400	26,400	(주)○○○
2025	2025.01.□□	2025.03.⑩⑩ ~ 2025.12.31	2025.03.㉨㉨ ~ 2026.02.㉦㉦	30,000	30,000	
2026	2026.01.△△	2026.02.◇◇ ~ 2026.12.31	2026.02.㉨㉨ ~ 현재	26,400	5,280 (진행중)	

2)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 지연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 「재무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기업지원시스템은 그 특성상 시민에게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원활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연중 계속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런데 진흥원은 2024~2026년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용역 발주를 지연 하였고 이에 따라 최소 31일에서 최대 68일의 연초 계약기간의 공백이 발생함.

[표 2] ▲▲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 공백 발생 현황

회계연도	발주일	계약일	용역기간	공백일수	계약상대자
2024	2024.01.○○	2024.02.♣♣	2024.02.♣♣ ~ 2024.12.31	31일	(주)○○○
2025	2025.01.□□	2025.03.ⓂⓂ	2025.03.ⓂⓂ ~ 2025.12.31	68일	
2026	2026.01.△△	2026.02.◇◇	2026.02.◇◇ ~ 현재	57일	

조치의견

-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한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 훈계 1명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절차 등을 검토하여 연중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주의)

2. 지원사업 운영 및 선정 소홀 (통보, 주의요구)

-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 등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칭하며,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기업은 지원사업에 당해 연도 최대 5개 사업까지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정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내규에 지원사업 수혜 횟수에 관한 제한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수혜내역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체 작성한 별도의 지원사업 목록을 기준으로 수혜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간접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 ㉡)만 수혜내역에서 제외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내규와 상이한 기준으로 수혜기업 선정 여부를 검토함.
- 또한, 진흥원은 2023년 수혜기업 선정 시 지원분야별 1개의 사업에만 선정할 수 있음에도 동일 분야에 중복 선정(2개 기업)하였으며, 2024년~2025년에는 당해 연도 5개 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을 수혜기업으로 재선정(3개 기업)함.

업체명	연도	부적정 확인 사항	총 지원금(원)
○○	2023	동일분야 중복선정(㉠)	1,\$\$\$,\$\$\$
□□	2023	동일분야 중복선정(㉡)	4,\$\$\$,\$\$\$
♣♣	2024	지원사업 초과선정(지원내역 6건)	1,\$\$\$,\$\$\$
♠♠	2024	지원사업 초과선정(지원내역 6건)	1,\$\$\$,\$\$\$
(주)◇◇	2025	지원사업 초과선정(지원내역 6건)	1,\$\$\$,\$\$\$

조치의견

- 지원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및 제한요건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부서가 공통된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등을 정비 (통보)
- 향후 지원사업 추진 시 교차검증 등 선정 절차를 철저히 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기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운영 및 관리 미흡 (개선, 주의요구)

-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내규」 및 「시설·장비 운영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입주실을 비워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규정 위반 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입주자는 월간 징수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주 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공간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제반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 및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창업지원센터 입주 실태 및 계약관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출근 일수가 저조(월 0~4일)한 기업(☆☆ 등 6개사)에 대하여 서면 경고 등 공식적인 제재 조치 없이 구두 통보에 그치고 있으며, 반기별 실태조사 시에도 매출액 등 위주로만 확인할 뿐 공간 활용도 점검은 포함되지 않아 입주기업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표 1] 주요 공간활용 저조 입주기업 현황

연 번	기업명	입주 기간	공간 활용 저조 내역 해당월(출근일수)	공식문서 조치여부	조치현황
1	본원	☆☆	‘22.04.~’26.04. -‘24년: 1월(0일) , 2월(1일), 3월(1일), 6월(2일), 7월(1일), 10월(2일), 11월(1일), 12월(1일) -‘25년: 3월(2일), 4월(1일), 5월(2일), 7월(1일), 11월(2일), 12월(0일) -‘26년: 1월(1일), 2월(1일), 3월(2일)	구두통보	연장평가 미승인으로 ‘26.04.00. 계약만료
2		◆◆	‘25.11.~’26.10. -‘25년: 11월(2일), 12월(3일) -‘26년: 1월(0일) , 2월(3일), 3월(2일)	구두통보	-
3		(주)순순	‘24.05.~’26.05. -‘24년: 9월(3일), 10월(4일), 11월(2일) -‘25년: 1월(2일), 10월(4일)	구두통보	연장평가 미승인으로 ‘26.05.00. 계약만료
4	동백	예비창업자 A	‘25.11.~’26.09. -‘26년: 1월(0일) , 2월(0일) , 3월(0일)	구두통보	‘26.03.00. 퇴거
5		♣♣	‘24.06.~’26.06. -‘26년: 1월(0일) , 2월(0일) , 3월(4일)	구두통보	‘26.06.00. 퇴거 예정
6	영덕	△△	‘24.09.~’26.08. -‘26년: 1월(0일) , 2월(1일), 3월(1일)	구두통보	-

- 또한, 계약 개시 전 보증금을 전액 납부받아야 함에도 총 12개 기업에 대하여 미납상태로 사전입주(1~44일)를 허용하거나 납부 기한을 부적정하게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사후 완납되어 미납금은 없으나 사전 완납한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안내 및 승인 절차의 보완이 요구됨.

[표 2] 입주보증금 납부 지연 및 안내 미흡 내역

연번	기업명	보증금(원)	입주일	납부기한	실제납부일	비고
1	▷▷	1,\$\$\$\$	'24.09.○○.	확인불가	'24.11.○○.	39일 지연 납부
2	◁◁	1\$\$\$\$	'24.09.○○.	확인불가	'24.10.○○.	44일 지연 납부
3	▣▣	9\$\$\$\$	'24.09.○○.	확인불가	'24.10.○○.	34일 지연 납부
4	★★	9\$\$\$\$	'24.09.○○.	확인불가	'24.10.○○.	30일 지연 납부
5	○○	1,\$\$\$\$	'24.09.○○.	확인불가	'24.10.○○.	33일 지연 납부
6	◆◆	9\$\$\$\$	'25.09.○○.	확인불가	'25.10.○○.	34일 지연 납부
7	▲▲	3,\$\$\$\$	'24.09.○○.	확인불가	'24.09.○○.	1일 지연 납부
8	●●	3,\$\$\$\$	'25.11.○○.	확인불가	'25.11.○○.	1일 지연 납부
9	▤▤	9\$\$\$\$	'25.09.○○.	'25.09.○○.	'25.09.○○.	납부기한 부적정 12일 지연납부
10	▼▼	1,\$\$\$\$	'24.10.○○.	'25.11.○○.	'25.11.○○.	납부기한 부적정 16일 지연납부
11	□□	1,\$\$\$\$	'24.11.○○.	'25.11.○○.	'25.11.○○.	납부기한 부적정 6일 지연납부
12	♡♡	보험증권	'25.11.○○.	확인불가	'25.11.○○.	보증보험 개시 6일 지연 가입

조치 의견

- 공간 활용 저조 기업에 대해 구두 통보가 아닌 서면(공문)제재 절차를 확립하고, 반기별 실태조사 점검항목에 '공간 활용도'를 반영하는 등 입주기업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개선)
- 향후 신규 입주 시 납부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보증금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하는 등 보증금 수납 및 입주 승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4. 채용 절차 개선 (개선, 주의요구)

- 지방공공기관은 「채용절차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지원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채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확인됨.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의 다양화 필요	<u>진흥원은 전자우편 접수 1가지의 방법으로 채용서류를 접수하고 있음</u> → 55세 이상 시니어 채용 등 정보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 편의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접수 방법의 다양화 필요
2.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각 전형별로 준수되어야 함</u> → 2024년 제○차 직원 채용에서 이전 행정■인력(△, □)이 지원했는데도 근무경험관계가 있는 내부직원을 위촉하여 서류전형 심사
3. 법정 가산점 제도 보완	<u>「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5% 내지 10% 가점을 부여함</u> → 내부 규정 또는 채용 공고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u>3가지 법정 가산점을 누락</u>
4. 신규직원의 경력 산정	<u>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함</u> → 경력 산정 시 주당 근무시간 미확인

조치의견

- 다양한 접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신규직원 경력 산정을 위한 전력 조회 시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함께 확인 (개선)
-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시험 전형별로 준수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법정 가산점 적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적용 (주의)

5. 성과급 산정 부적정 (시정요구)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Ⅲ-3-1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월액×지급률'로 산정하며, 이때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의 기본연봉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함.
- 따라서,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 동안의 근무에 대응하는 연봉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특히 동일 연도 내에서 승진 등으로 인하여 연봉 수준이 변동된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연봉만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에 대응하는 연봉 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평가대상연도 중 승진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연봉이 변동된 대상자에 대하여, 연봉 변동 전·후 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변동 이후 연봉액만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연도 전체 근무 월수에 일괄 적용하여 연봉월액을 산정하였음.
- 이로 인해 승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이 전 기간에 적용되어 성과급이 과다 산정되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낮은 연봉이 전 기간에 적용되어 과소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단위: 원)

연도	구분	대상자	잘못 산정된 연봉월액	재산정된 연봉월액	지급된 성과급(A)	재산정된 성과급(B)	차액(A-B)
합 계							◇◇,◇◇◇
2025	임금피크제	000	5,000,000	5,000,000	4,000,000	4,000,000	-10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
	승진	00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30,000
2024	임금피크제	000	5,000,000	5,000,000	4,000,000	4,000,000	-20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30,000
	승진	00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3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
2023	승진	000	4,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8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0
	승진	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40,000

조치의견

-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과다 지급된 성과급 [A]원 환수, 과소 지급된 성과급 [B]원 지급 (시정)

6. 직인 관리 규정 미비 및 등록·관리 부적정 (개선, 시정요구)

1) 전자이미지직인 관련 규정 미비 및 대장 비치

- 용인시산업진흥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및 「용인시 공인 조례」 제7조의2,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라 「직인 규정」에 전자이미지직인의 등록 절차 및 대장 비치, 관리 주체 지정, 폐기 및 갱신 절차, 위·변조 방지 보안 조치 등 전자이미지직인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에 대하여 별도의 전자이미지직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직인의 위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보안 및 안전장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런데 현행 「직인 규정」에 실제 전자문서 유통의 핵심인 전자 이미지직인에 대한 등록 및 재등록, 폐기, 관리 주체, 대장 비치 등 관리 통제에 필요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직인(원장 직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전자이미지직인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사용해 온 사실이 있음.

2) 직인 인영부 보존 및 관리 소홀

- 「직인 규정」 제8조에 따라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누락 없이 보존하여야 함.
- 그런데 2023년에는 직인의 인영을 251일 지연하여 인영부에 등재 하였으며, 2024년에는 인영부 보존 업무를 누락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직인 관리 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존여부(보존일)	여 (2023.00.00.)	부	여 (2025.00.00.)	여(2026.00.00.)

조치의견

- 전자이미지직인의 등록 절차, 대장 비치 의무 및 관리 주체 지정 등 전자 이미지직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직인 규정」을 개정 (개선)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직인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규정에 따른 인영부 보존 업무를 누락하지 않는 등 직인 관리에 철저 (시정)

7. 계약체결 시 업무처리 소홀 [권고, 주의요구]

1) 건설공사 압류금지 임금 미기재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정한 임금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진흥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표 1] 건설공사 계약체결 및 압류금지 임금 미기재 현황

구 분	합 계	2023년(9~12월)	2024년	2025년	2026년(1~2월)
계약 건수 (압류금지 임금 미기재 건수)	14	1	9	4	-

2) 계약 시 인지세 연대 납부 소홀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1천만원 초과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진흥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세를 연대 납부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표 2] 1천만원 초과 계약 및 인지세 납부 현황

구 분	합 계	2023년(9~12월)	2024년	2025년	2026년(1~2월)
계약건수	67	3	32	27	5
인지세액	203만원	8만원	100만원	80만원	15만원

조치의견

-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고)
- 계약상대자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 납부하도록 (주의)

8. 인사 규정 등 정비 및 이행 필요 [권고, 주의요구]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권고(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됨.

현재 규정	권고(주의) 사항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원장(인사권자)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동을 견제 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동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분리 할 필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해 징계감경 제외 비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흥원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법령에서 금지한 중대 비위행위의 징계감경 발생 소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해서도 징계감경 제외 비위로 규정 필요
휴직자는 복무상황 보고를 위해 휴직 기간 중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은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하고,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함.	진흥원은 공식적인 절차와 보고 체계가 아닌 휴직자와의 유선 확인만으로 이를 점검하고 있어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 필요

조치의견

- 관련 규정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개정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비 (권고)
- 휴직자의 복무 상황 점검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 (주의)

9. 퇴직자 경비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 진흥원 「연봉제 규정」에 따르면 원장·본부장·팀장에게는 보직수당을,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경영평가·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보직수당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특정업무수행경비의 지급방법은 「연봉제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해당 훈령은 퇴직·교육·병가·휴직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직수당 또는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임직원이 퇴직하여 해당 보직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후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해당 경비를 지급 받고 있는 [A]의 퇴직 시,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월의 보직수당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연동된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구분	부당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A-B)	비고
계			[A] 원	
보직수당	3\$,,\$,\$\$원	3\$,,\$,\$\$원	[B]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8\$,,\$,\$\$원	1\$,,\$,\$\$원	[C] 원	
퇴직금	3,,\$\$,,\$\$\$원	3,,\$\$,,\$\$\$원	[D] 원	

조치의견

-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직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퇴직금 [A] 원 환수 (시정)

10. 계약금액 조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시정요구]

1) 계약금액 조정 소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또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이윤은 기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 복구공사”의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9개의 신규비목 단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산정한 단가 그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인 13.61%가 아닌 15%로 적용하여 최소 ㉠원에서 최대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2)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그러나 진흥원은 “2024년 ㉢㉣ 실내건축 공사”의 준공 시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환경보전비 ㉤원을 지급하였음.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계산식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대비 초과 지급된 ㉠원과 부당하게 지급한 환경보전비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